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9월 3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안**	안** 1996-06-12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2길	무단전출
황**	황** 1953-01-09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	무단전출
김**	김** 1963-10-12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	무단전출
정**	정** 1971-03-15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김 태권 문의전화 : 02-3396-6830)

2016년 09월 22일

신당제5동장 인